

신·구 지하상가 연결통로 공동이용시설 대관 운영 지침

제정 2024. 1. 25.

일부 개정 2024. 4. 9.

일부 개정 2026. 1. 9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(재)대전연구원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에서 관리하는 공동이용시설의 대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① “공동이용시설” 이라 함은 복합문화공간, 전시공간 및 작가휴게실을 말한다.
- ② “복합문화공간” 이라 함은 공연·교육, 대전광역시 주관 행사 등의 문화·예술·전시 등 프로그램 운영 및 대관 업무를 말한다.
- ③ “전시공간” 이라 함은 미술품 전시, 대전광역시 주관 행사 등의 전시 프로그램 운영 및 대관 업무를 말한다.
- ④ “작가휴게실” 이라 함은 공동이용시설 사용인 등의 전시·공연·교육 등 행사 준비 및 휴게실을 말한다.
- ⑤ “사용인” 라고 함은 센터의 사용승인을 받고 전시회, 기타 행사를 조직·운영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대관 구분 및 접수기간) ① 공동이용시설의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.

- ② 정기대관은 센터에서 일괄 접수 후 제5조에 따라 승인한다.
- ③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접수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잔여기간을 대상으로 한다.
 1. 정기대관의 일정과 겹치지 않는 기간
 2. 복합문화공간과 전시공간의 대관이 겹치지 않는 기간

제4조(사용신청 및 전시 등 기간) ①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(대관신청서·계획서)을 작성 후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전시기간(작품설치 및 철수기간을 포함한다)은 1회 7일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14일까지 신청 가능하다. 다만, 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③ 공동이용시설 및 작가 휴게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복합문화공간 : 평일, 09:00 ~ 18:00
 2. 전시공간 : 평일, 09:00 ~ 18:00
 3. 작가휴게실 : 평일, 09:00 ~ 18:00
- ④ 이 외의 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센터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용승인) ① 센터는 대관 신청 마감 후 대관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결과를 대관 받으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대관 희망일이 중복되는 경우 신청자 간 조정 협의를 거치며, 조정이 어려운 경우 전시의 목적,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센터에서 결정한다. 이 경우 대전광역시가 개최하는 전시 및 행사를 우선으로 할 수 있다.

제6조(대관 제한) 센터는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동이용시설 등을 대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사용승인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 등을 할 때
2. 종교 및 정치적 행사
3. 시설물 훼손의 우려가 있는 행사
4.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행사
5.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
6.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본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
7.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부적절 하다고 판단하는 행사

제7조(사용 취소) ① 사용인이 공동이용시설 사용을 취소하려는 경우 사용개시일 기준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용인은 센터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.

제8조(사용 해지)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승인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사용인이 운영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
2. 사용인이 취소 의사를 표시하는 등 사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3. 사용인이 사용승인 이후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기 곤란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때
4. 사용승인 후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

제9조(공동이용시설 출입) ① 사용인은 센터 직원 및 유관기관 직원이 시설물 관리 등 업무수행을 위해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.

② 사용인은 방법, 소방 및 환경위생 등의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직원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, 센터가 확인하는 내방 인사의 출입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10조(양도 및 전대 금지) 사용인은 공동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인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

제11조(홍보물 설치 및 부착 등) 사용인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전시·공연 등과

무관한 홍보물의 부착은 아니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물(스탠딩 배너, 행사용 현수막 등)을 센터 담당자와 협의 후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되 전시 등 행사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.

1. 벽면 등 공간 훼손(못, 테이프, 접착제, 타카, 시트지 사용) 금지
2. 스탠딩 홍보물은 센터가 지정하는 게시 공간에 설치

제12조(소방법 등 관련 법규 준수) ① 사용인은 소방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, 공동이용시설 대관 사용승인 기간 중 법규 준수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사용인의 책임으로 한다.
② 사용인은 대관 공간에서 전열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다.

제13조(폐기물 처리) ① 사용인은 시설물 사용이나 시설물 철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각종 쓰레기 또는 폐기물 등은 즉시 반출 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를 게을리하거나 통보한 기일 내 반출 및 처리하지 않을 때는 센터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에 따른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
제14조(원상복구) ① 사용인은 전시 및 행사 등의 기간이 끝나는 즉시 사용한 시설물과 비품 등을 센터와 협의 하에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.
② 사용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사용인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하여 센터가 우선 원상복구한 후 사용인에게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15조(대관의 책임) ① 전시 및 행사 등 물품은 사용인의 책임으로 보관·관리하여야 하며, 도난·화재 등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, 사용인은 전시물품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.
② 사용인의 부주의 등 귀책 사유로 관람객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 사용인이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.

부 칙<2024. 1. 25.>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(재)대전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4. 4. 5.>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(재)대전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사용승인에 대한 결과조치) 이 지침 시행 전에 대관승인 받은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승인 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<2026. 1. 9.>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지하상가 연결통로 공동이용시설 대관 신청서

단체·개인명		신청공간	☐ 복합문화공간 ☐ 전시공간 ☐ 작가휴게실
성명(대표자)			
주소			
전화번호		휴대폰	
이메일			

전시·행사명	
사용일시	2025년 월 일 ~ 2025년 월 일 (일간) / 00:00 ~ 00:00 ※ 설치 및 철거 기간을 포함
분야	공연, 강의, 한국화, 서양화, 조각(설치), 서예, 사진, 공예, 디자인, 기타()
성격	공연, 강의, 개인전, 기획전, 회원전, 기념전, 공모전
내용	※ 대관계획서 별첨

「신·구 지하상가 연결통로 공동이용시설 대관 운영 지침」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. (□칸에 V표시)
☐ 확인함 ☐ 확인 안 함

개인정보 이용 수집 동의서 (□칸에 V표시)

사용자는 「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, 제2항」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대관 신청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.
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
 - 공동이용시설 대관 사용자 본인 식별
 - 대관업무 진행 및 안내사항 전달
-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: 단체명 또는 개인 성명, 주소, 연락처, 이메일 등
-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 -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법률로 정한 목적,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
 - 개인정보 및 이용기간은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기간 종료시까지이며 이후에는 폐기처분함
-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
 -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대관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

☐ 동의함 ☐ 동의 안 함

「신·구 지하상가 연결통로 공동이용시설 대관 운영 지침」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 사용을 신청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신·구 지하상가 연결통로 공동이용시설 대관 계획서

1. 전시·행사 개요 ※ 공연 등 모든분야 작성

전시·행사명	○○○○전시/ 또는 ○○○○버스킹 공연 등
참여자 (인원 수 기재)	00명
사용일시	2025년 월 일 ~ 2025년 월 일 (일간) / 00:00 ~ 00:00 (0시간 00분)
주 제	

2. 전시·행사 내용(기획 의도) - 자세히 기술

○○○○를 기념하여 ○○○○ 대상으로
○○○○에 대한 ○○○○를 전달하기 위한 ○○○○ 전시 홍보
또는
○○○○를 활용한 ○○○○를 위한 버스킹 공연(연주) 등

3. 전시·행사 참여자 또는 작품(작업) 소개 - 2개 이상 첨부 필수

참여자	작품(행사, 공연) 이미지	작품(작업) 설명
○○○		
○○○		
○○○		

[별지 제2호]

담당부서	도 시 재 생 팀	승인번호			제2026-00호
책 임 자	센 터 장				
담 당 자	담 당 자				
연 락 처	☎ 042-716-0133				
신·구 지하상가 연결통로 공동이용시설 대관승인서					
성 명 법인일 경우(명칭)					
주 소					
허 가 내 용					
재산의 표시	지목	공부면적 (㎡)	허가면적 (㎡)		사용목적
계				0㎡	
승 인 기 간	일시	2025. 0. 00. ~ 2025. 0. 00.(0일간) 00:00 ~ 00:00(00분간)			
공동이용시설 대관 신청에 대하여 대관을 승인합니다. 2026년 0월 00일 대 전 도 시 재 생 지 원 센 터 장					

신·구 지하상가 연결통로 공동이용시설 사용취소 신청서

구 분		내 용	
전시·행사명			
사용기간		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 (일간) 00:00 ~00:00 (0시간 00분)	
사용자	성 명 (법인일 경우 명칭)		신청공간 ☐ 복합문화공간 ☐ 전시공간 ☐ 작가휴게실
	주 소		
	전화번호	휴대폰	
	이메일		
사 유			
비 고			

「신·구 지하상가 연결통로 공동이용시설 대관 운영 지침」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26년 **일일** **일일**
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